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4. 2. 27.(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선미 의원 외 7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한선미 의원 외 7명
- 제안일 : 2024. 2. 16.
- 회부일 : 2024. 2. 20. (의안번호 : 24-7)

2. 제안이유

-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는 경우,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통장 위·해촉 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촉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이외에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통·반의 조직(안 제2조 ~ 제8조)
 -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안 제5조)

-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시에 위·해촉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함.

○ 편의제공(안 제10조)

-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입법예고: 2024. 2. 8. ~ 2. 14.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는 경우,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 통장 위·해촉 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촉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외에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항별 검토

- 가. 안 제2조제4항은 통·반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 기존에는 반의 세대수만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반수도 가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 나. 안 제5조제6항은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을 개정하는 내용임.
 -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시에 위·해촉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함.
- 다. 안 제10조제3항은 편의제공으로 신설하는 내용임.
 -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통·반 운영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통장 위·해촉 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촉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통장의 임무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 및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조례안 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할 직원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통·반장과 소통 리더십 역량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되도록, 관리부서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